

호반 써밋 스카이센트럴 (인천) 입주자 모집공고

(입주자모집공고일 : 2020년 4월 3일)

HOBAN SUMMIT
스카이센트럴

입주 자격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호반 써밋 스카이센트럴 홈페이지(www.hobansummit-yj.co.kr)의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코로나19 관련 안내 사항
- 국토교통부의 ‘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물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’에 근거하여 인천 영종국제도시 A47블록 호반써밋 스카이센트럴은 사이버 건물주택을 운영(www.hobansummit-yj.co.kr)합니다.
- 본 사이버 건물주택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* 분양일정, 청약안내,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(www.hobansummit-yj.co.kr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*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접수 기간 및 정당계약 기간 등 일부 지정일에 한하여 건물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.
* 당사가 고지한 해당 날짜 및 운영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. * 건물주택 방문 시 당첨자 및 계약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.(동반자 동행 불가 / 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)

1. 공급위치 및 사업주체 등 현황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0조 규정에 의거 「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-5066호(2020.04.02.)」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
■ 공급 위치 :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88-1일대(영종국제도시 A47BL) (단위: 원, 부가가치세 포함)

사업주체 및 시공회사	감리회사 및 감리금액			
	건축감리	전기감리	소방감리	통신감리
(주)호반건설 (204711-0007384)	(주)포스코에이앤씨 건축사사무소 1,433,817,000	(주)건축사사무소 건일종합기술 456,660,930	(주)이림기술단 197,505,000	(주)금라기술단 89,100,000

2. 공급일정

구 분	특별공급 (기관추천, 신혼부부, 경제자유구역, 다자녀가구, 노부모부양)	일반 1순위	일반 2순위	당첨자발표	당첨자 서류접수 (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)	계약체결
일 정	2020.04.13.(월)	2020.04.14.(화)	2020.04.16.(목)	2020.04.22.(수)	2020.04.24.(금) ~ 2020.04.29.(수)	2020.05.05.(화) ~2020.05.07.(목)
방 법	인터넷 청약 (08:00 ~ 17:30)	인터넷 청약 (08:00 ~ 17:30)	인터넷 청약 (08:00 ~ 17:30)	개별조회 (www.applyhome.co.kr 로그인후 조회 가능)	건분주택 (10:00~17:00)	건분주택 (10:00~16:00)
장 소	▶ 한국감정원 청약홈 - PC : www.applyhome.co.kr - 스마트폰 : “청약홈” 앱 *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	▶ 한국감정원 청약홈 - PC : www.applyhome.co.kr - 스마트폰 : “청약홈” 앱	▶ 한국감정원 청약홈 - PC : www.applyhome.co.kr - 스마트폰 : “청약홈” 앱	▶ 한국감정원 청약홈 - PC : www.applyhome.co.kr - 스마트폰 : “청약홈” 앱	▶ 당사 건물주택 방문 접수 -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※ 접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접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※ 지정일 및 당첨자의 입장 불가합니다.	당사 건물주택

3. 공급규모 및 공급금액

■ 공급규모 및 내역 : 아파트 지하1층~지상25층 6개동, 총 5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[일반(기관추천)특별공급 53세대,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53세대,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3세대, 신혼부부 특별공급 104세대,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6세대 포함]
■ 공급대상 (단위 : ㎡, 세대)

주택 구분	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	주택형 (전용면적기준)	약식 표기	세대당 계약면적(㎡)					세대별 대지지분	총공급 세대수	공급 세대수						일반분양 세대수	저층 우선배정 세대수	입주 예정 시기
				세대별 공급면적			기타 공용면적 (지하주차장등)	계약면적			특별공급								
				주거전용	주거공용	소계					기관추천	경제자유구역	신혼부부	다자녀가구	노부모 부양	계			
민영주택	2020000347-01	74.5850A	74A	74.5850	24.3170	98.9020	40.4205	139.3225	55.0196	96	9	9	18	10	2	48	48	4	2022년 07월
	2020000347-02	74.7150B	74B	74.7150	23.9634	98.6784	40.4910	139.1694	55.1155	98	10	10	18	10	2	50	48	4	
	2020000347-03	84.5781A	84A	84.5781	26.8383	111.4164	45.8362	157.2526	62.3913	117	12	12	24	13	4	65	52	7	
	2020000347-04	84.9786B	84B	84.9786	26.6454	111.6240	46.0533	157.6773	62.6868	123	12	12	24	12	4	64	59	7	
	2020000347-05	84.8753C	84C	84.8753	25.8012	110.6765	45.9973	156.6738	62.6106	50	5	5	10	4	2	26	24	2	
	2020000347-06	84.8631D	84D	84.8631	26.6550	111.5181	45.9907	157.5088	62.6016	50	5	5	10	4	2	26	24	2	
	합계									534	53	53	104	53	16	279	255	26	

※ 주택 공급 신청 시 [주택형] 또는 [형]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(㎡)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,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(㎡)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(※ 평형환산방법 : 공급면적(㎡) x 0.3025 또는 공급면적(㎡) ÷ 3.3058)

■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

주택형	구분	공 급 세대수	층 구분	세대수	분양가격			계약금(10%)		중도금(60%)						잔금(30%)	
					대지비	건축비	계	1회	2회	1회	2회	3회	4회	5회	6회	입주지정일	
								계약시	2020.6.3	2020.8.10	2020.12.9	2021.4.9	2021.8.9	2021.12.9	2022.3.9		
74.5850A	74A	96	1	1	118,369,000	189,531,000	307,900,000	10,000,000	20,790,000	30,790,000	30,790,000	30,790,000	30,790,000	30,790,000	30,790,000	92,370,000	2022년 07월
			2	3	118,369,000	201,831,000	320,200,000	10,000,000	22,020,000	32,020,000	32,020,000	32,020,000	32,020,000	32,020,000	32,020,000	96,060,000	
			3	4	118,369,000	217,531,000	335,900,000	10,000,000	23,590,000	33,590,000	33,590,000	33,590,000	33,590,000	33,590,000	33,590,000	100,770,000	
			4	4	118,369,000	224,531,000	342,900,000	10,000,000	24,290,000	34,290,000	34,290,000	34,290,000	34,290,000	34,290,000	34,290,000	102,870,000	
			5층이상	84	118,369,000	231,531,000	349,900,000	10,000,000	24,990,000	34,990,000	34,990,000	34,990,000	34,990,000	34,990,000	34,990,000	104,970,000	
74.7150B	74B	98	1	2	118,575,000	186,325,000	304,900,000	10,000,000	20,490,000	30,490,000	30,490,000	30,490,000	30,490,000	30,490,000	30,490,000	91,470,000	
			2	4	118,575,000	198,425,000	317,000,000	10,000,000	21,700,000	31,700,000	31,700,000	31,700,000	31,700,000	31,700,000	31,700,000	95,100,000	
			3	4	118,575,000	214,025,000	332,600,000	10,000,000	23,260,000	33,260,000	33,260,000	33,260,000	33,260,000	33,260,000	33,260,000	99,780,000	
			4	4	118,575,000	220,925,000	339,500,000	10,000,000	23,950,000	33,950,000	33,950,000	33,950,000	33,950,000	33,950,000	33,950,000	101,850,000	
			5층이상	84	118,575,000	227,825,000	346,400,000	10,000,000	24,640,000	34,640,000	34,640,000	34,640,000	34,640,000	34,640,000	34,640,000	103,920,000	
84.5781A	84A	117	1	3	134,228,000	208,472,000	342,700,000	10,000,000	24,270,000	34,270,000	34,270,000	34,270,000	34,270,000	34,270,000	34,270,000	102,810,000	
			2	5	134,228,000	222,072,000	356,300,000	10,000,000	25,630,000	35,630,000	35,630,000	35,630,000	35,630,000	35,630,000	35,630,000	106,890,000	
			3	5	134,228,000	239,672,000	373,900,000	10,000,000	27,390,000	37,390,000	37,390,000	37,390,000	37,390,000	37,390,000	37,390,000	112,170,000	
			4	5	134,228,000	247,472,000	381,700,000	10,000,000	28,170,000	38,170,000	38,170,000	38,170,000	38,170,000	38,170,000	38,170,000	114,510,000	
			5층이상	99	134,228,000	255,172,000	389,400,000	10,000,000	28,940,000	38,940,000	38,940,000	38,940,000	38,940,000	38,940,000	38,940,000	116,820,000	
84.9786B	84B	123	1	3	134,864,000	206,736,000	341,600,000	10,000,000	24,160,000	34,160,000	34,160,000	34,160,000	34,160,000	34,160,000	34,160,000	102,480,000	
			2	5	134,864,000	220,336,000	355,200,000	10,000,000	25,520,000	35,520,000	35,520,000	35,520,000	35,520,000	35,520,000	35,520,000	106,560,000	
			3	5	134,864,000	237,836,000	372,700,000	10,000,000	27,270,000	37,270,000	37,270,000	37,270,000	37,270,000	37,270,000	37,270,000	111,810,000	
			4	5	134,864,000	245,536,000	380,400,000	10,000,000	28,040,000	38,040,000	38,040,000	38,040,000	38,040,000	38,040,000	38,040,000	114,120,000	
			5층이상	105	134,864,000	253,336,000	388,200,000	10,000,000	28,820,000	38,820,000	38,820,000	38,820,000	38,820,000	38,820,000	38,820,000	116,460,000	
84.8753C	84C	50	1	2	134,700,000	199,600,000	334,300,000	10,000,000	23,430,000	33,430,000	33,430,000	33,430,000	33,430,000	33,430,000	33,430,000	100,290,000	
			2	2	134,700,000	212,900,000	347,600,000	10,000,000	24,760,000	34,760,000	34,760,000	34,760,000	34,760,000	34,760,000	34,760,000	104,280,000	
			3	2	134,700,000	230,000,000	364,700,000	10,000,000	26,470,000	36,470,000	36,470,000	36,470,000	36,470,000	36,470,000	36,470,000	109,410,000	
			4	2	134,700,000	237,600,000	372,300,000	10,000,000	27,230,000	37,230,000	37,230,000	37,230,000	37,230,000	37,230,000	37,230,000	111,690,000	
			5층이상	42	134,700,000	245,200,000	379,900,000	10,000,000	27,990,000	37,990,000	37,990,000	37,990,000	37,990,000	37,990,000	37,990,000	113,970,000	
84.8631D	84D	50	1	2	134,681,000	205,119,000	339,800,000	10,000,000	23,980,000	33,980,000	33,980,000	33,980,000	33,980,000	33,980,000	33,980,000	101,940,000	
			2	2	134,681,000	218,719,000	353,400,000	10,000,000	25,340,000	35,340,000	35,340,000	35,340,000	35,340,000	35,340,000	35,340,000	106,020,000	
			3	2	134,681,000	236,019,000	370,700,000	10,000,000	27,070,000	37,070,000	37,070,000	37,070,000	37,070,000	37,070,000	37,070,000	111,210,000	
			4	2	134,681,000	243,819,000	378,500,000	10,000,000	27,850,000	37,850,000	37,850,000	37,850,000	37,850,000	37,850,000	37,850,000	113,550,000	
			5층이상	42	134,681,000	251,519,000	386,200,000	10,000,000	28,620,000	38,620,000	38,620,000	38,620,000	38,620,000	38,620,000	38,620,000	115,860,000	

4. 신청자격

■ 특별공급 신청자격
•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,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.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)
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,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.
•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. (단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의 제1호, 제2호,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)
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04.03.)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.
※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(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)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,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(부부 포함)이 각각 신청, 중복 청약하여 당첨(예비포함)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. [계약체결 불가,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, 당첨일로부터 ‘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, 수도권 외 6개월, 위촉지역 3개월’(공급신청 지역 기준) 동안 다른 분양주택(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)의 당첨 제한]
- 기관추천 / 다자녀가구 / 신혼부부 특별공급 :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
-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: 무주택세대주 요건
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04.03.)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.